

★ ◎

사장 방침 제1079호

문서번호	택지조성팀-8388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5.12.11
공개여부	공개

팀 원	택지조성팀장	택지사업처장	택지사업본부장	사장
				12/11
오근우	박광균	김소겸	정현규	변창흠
협 조				

자원절약 및 친환경적인 건설폐기물 처리 촉진을 위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검토**

서울특별시 SH공사  
(택지조성팀)

자원절약 및 친환경적인 건설폐기물 처리 촉진을 위한

##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검토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하나인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와 무대 처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 개요

- 발생 : 건설현장에서 기존 도로포장 및 지장물 바닥포장의 깨기, 절삭으로 인하여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페아스콘)가 발생.(건설폐기물중 하나)



(페아스팔트콘크리트)

- 처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52호)에 의거 페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최대한 재활용이 필요함.

- 주요지구별 페아스콘 발생량 및 처리비용

지구	내곡지구	문정지구	세곡2지구	탄천우안	장지교
발생량(톤)	11,689	4,120	10,565	11,084	12,947
처리비용(백만원)	112	63	97	168	153

## □ 검토배경

-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시 처리비용이 수반되고, 현장에서 원거리 업체 낙찰 가능성 및 단일업체 처리로 인하여 원활한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주로 절삭 보다는 깨기로 인한 덩어리 형태(상기 사진과 유사)로 발생되며,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는 덩어리로 발생된 폐아스콘을 파쇄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갖춰야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LH공사는 폐아스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관련 폐기물처리 용역을 발주하는 실정이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를 방문 및 협의를 통하여 무대로 처리토록 일부 업체와 협약체결 가능함.

## □ 조치의견

-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중 하나인 폐아스콘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와 무대 처리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예산절감에 기여코저 하며,
- 추후 무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약체결 업체 수를 늘려가며, 협약조건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영구적으로 경제적 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처리를 가능토록 하게 함.
- 향후 발주되는 현장부터 본 방침상의 협약을 적용하며(타 업체와 별도의 협약 체결 가능), 폐아스콘 수집·운반의 경우 기존 건설폐기물 업체 설계물량에 반영 또는 수집·운반을 별도 발주 조치코저 함.

붙임 :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협약서(안) 1부. 끝.

## (붙임)

#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협약서(안)

SH공사(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의 범위 )

재활용의 범위는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발주자의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에 한한다.

### 제3조(협약기간 등)

- ① 협약기간은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협약조건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협약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경우 협약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발주자가 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조건)

- ① 발주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현장 위치를 감안 근거리에 위치하거나 즉시 위탁처리가 가능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발주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 생산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다른 용도(매립등)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계약상대자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아니되며,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건설폐기물로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건설폐기물이 10톤 미만일 경우 인수·인계에 관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를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확인된 물량(배출현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발행된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여 정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필증과 폐기물 재활용신고필증을 등록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자로서,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인 GR마크를 획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공동도급협정을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 제5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등)

① 현장에서 절삭, 덩어리등의 상태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무상으로 처리하며(발주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이외 불순물의 혼입반입은 불가한다.

② 건설폐기물(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가 별도 계상하며, 발주자가 수집·운반업체를 지정한다.

#### 제6조(효력)

이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한다.

SH공사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2월

“발주자”

SH공사 사장

“계약상대자”

한밭산업(주) 대표이사  
이 호 준 (인)

서울아스콘(주) 대표이사  
박 창 호 (인)

(주)서원아스콘 대표이사  
송 인 숙 , 이 호 준 (인)

세진아스콘(주) 대표이사  
김 정 선 (인)